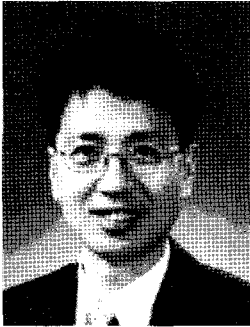


경제의 세계화와 경쟁법의 국제규범화



김진국

건양대학교 사이버경제무역학부 교수

세계경제의 변화요인 중 하나로서 디지털 경제의 급속한 확산이 세계화를 더욱 가속화하고 있고 그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결과적으로 경쟁정책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경쟁법·정책의 다자간 규범 노력을 펴 나갈 때 현재 나타나고 있는 세계화에 따른 문제점을 일부분이라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I. 서론

80년대 이후 각국의 규제개혁과 관세 및 비관세장벽 등이 완화·철폐되고 자본 이동이 이전에 비해 쉽게 이루어져 국가간 상품이동뿐만 아니라 금융부문을 비롯한 타 부문의 서비스에 있어서도 교역이 증대되어 세계는 하나의 경제권으로 치닫해 되었으며 여기에 특히 90년대 중반 이후, 디지털경제의 확산으로 세계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무역과 경쟁정책의 보완성 및 충돌 가능성 등으로 인한 문제들이 빈번하게 발생해 왔다.

미국 및 EU는 자국의 수출 및 수입이 타국 기업들의 반경쟁적 행위로 방해받고 있다는 인식하에 이를 시정하고자 역외적용을 시도하고 있으며, 우리 나라도 미국 및 EU의 역외적용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경쟁정책의 다자간 규범화

이전에 실현성이 높은 양자협정 체결 필요성과 함께 '공정거래법'의 역외적용 필요성도 동시에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디지털 경제의 확산은 세계화를 더욱 빠른 속도로 진행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디지털 경제에 준비하지 못했거나 적응하지 못한 국가나 개인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세계화는 기회라기 보다는 자신의 미래를 박탈하는 하나의 이데올로기로 받아들여져 각국의 NGO(비정부기구)들을 중심으로 세계화에 대한 거센 반발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II. 세계경제환경 변화

1. 세계경제환경 변화와 초국경적 경쟁 격화: 국제협력 필요성 증진

세계경제환경의 변화와 경쟁정책

냉전체제의 종식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교역과 개방이 확대되었으며, 동시에 서비스와 자본거래의 확대 및 다국적기업과 생산의 세계화로 국제교역의 상호의존성은 더욱 심화되어 왔다.

이러한 국제교역의 상호의존성이 심화된 배경에는 정보통신기술 및 컴퓨터 등의 보급으로 지식기반 산업의 고속성장을 가져 왔고 특히 인터넷과 전자상거래의 발달은 기업간 초국경적 무한경쟁을 격화시키게 되었다.

교역이 세계화함에 따라 기업간 경쟁은 이제 국경의 테두리를 벗어나 세계시장의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일국의 소비자를 다른 나라에서 발생한 경쟁제한적 행위로부터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게 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국제무역이 증가하고 초국경적인 경쟁이 활발하지만 이를 관장하는 법률의 내용과 집행은 각국마다 다른데, 즉 미·일간에도 다르고 미·EU 간도 상이함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법률 자체가 각국마다 다른 점은 글로벌 경영을 시행하려는 글로벌 기업에게 있어서 거래비용을 증가시켜 결국, 고비용 저효율의 기업환경으로 작용하여 교역으로 인한 세계 후생증대에 장애물로 등장하게 되었다.

WTO의 출범으로 과거의 GATT와는 달리 공산품과 함께 농산물,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을 포괄함은 물론 투명한 무역정책제도의 유지와 제고된 분쟁해결능력을 채택함으로써 국제교역에 관한 UN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즉, 모든 회원국으로 하여금 자국의 국내법규를 WTO협정에 합치시키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WTO협정과 상치되는 기존의 국내조치는 철폐토록 함으로써 새로운 다자무역체제의 출발을 도모해 옴으로써 세계가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

되는 세계화 과정을 가속화 하는데 일조해 왔다.

그러나 WTO 체제는 무역을 제한하고 왜곡하는 국경에서의 관세 및 비관세 무역장벽을 제거하게 되면 국가간의 자유무역 및 경쟁이 달성될 것이라는 기본적 전제에 입각해 있으나, 실제로는 국경에서의 무역장벽뿐만 아니라 기업간 경쟁을 제한하는 국내기업들의 상거래관행이나 시장구조 때문에도 외국기업의 실질적인 시장접근이 방해될 수 있음을 보여왔다.

그 동안 GATT/WTO의 지속적인 무역자유화로 국경장벽이 대폭 낮아짐에 따라 세계시장이 통합되고 국경의 개념이 크게 약화되고 있으나, 외국기업의 시장접근을 저해하는 구조적 장벽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 자주 지적되었으며, 이에 따라 경쟁정책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커지게 되었다.

또한, 기업활동의 글로벌화로 다국적기업의 경쟁제한행위, 여러 국가에 소재하는 기업간의 국제카르텔 등 국제적 경쟁문제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효과적인 경쟁법 집행을 위한 국제협력 증진의 필요성이 동시에 커지고 있다.

경쟁정책은 WTO의 정신인 '보다 공정한 교역'에 직접적으로 연계되고 있다. WTO는 공정무역과 더욱 밀접하다고 할 수 있는 민간기업차원의 조치들은 고려해 오지 않았으나 WTO 내에도 무역과 경쟁작업반을 두어 무역과 경쟁정책간의 상호작용에 대해 논의해 왔다.

2. 디지털 경제와 세계화의 가속화

컴퓨터와 인터넷 등 디지털 기술이 생산·거래 활동에 활용되어 생산, 유통, 소비, 거래 등 제반 경제활동의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뀌게 된 경제시스템을 디지털 경제로 정의할 수 있는데 디지털 경제의 도래는 단순한 기술혁신이 아닌 경

제·사회 등 전체 문화의 대변력이라고 할 수 있으며 대기업, 제조업, 대리점 등 전통적 유통체제 등을 전제로 한 기존의 경쟁정책과 집행방식이 디지털 경제에 적합한지 여부도 체계적으로 검토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게 되었다.

인터넷의 확산과 세계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국제적 대형 인수합병과 관련 네트워크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가 급증하고 있는 현상 등은 세계화를 더욱 가속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디지털 경제의 발전은 세계화를 가속화시키는 일익을 담당하고 있으며 세계화의 이면에는 각국 내의 정보소유자(information-haves)와 정보비소유자(information-have-nots)간의 digital divide뿐만 아니라 각국간에도 digital divide가 이루어져 이른바 20대 80의 세계화를 가속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음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즉, IT투자가 가능한 국가와 가능하지 못한 국가간에 발생되고 있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지적재산권 문제와 연계되어 새로운 남북문제로 발생되고 있으며 세계화로 인한 득을 상쇄시키고도 남는 실로 작용하고 있음도 사실이다.

미국은 전후 최대의 호황기라고 할 만큼 90년대를 성장의 10년으로 마무리 지었는데, 이를 특징짓는 것으로는 재정·통화정책의 적정성 및 규제완화, 노동시장의 유연성, 주주중심의 기업 지배구조 및 기술혁신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미국식 모델은 90년대 들어 특히 일본 경제가 장기 불황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면서, 세계경제의 성장을 이끌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인 것으로 인식되면서 점차 전세계로 확산돼 나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자본의 힘에 기초를 둔 미국식 세계화는 특히 냉전종식 후 세계의 유일한 가치로 군림해 오고 있는데, 레이건, 대처 치하에서 활력을 과시한

후,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더욱 강화된 것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식 세계화의 논리는 국가의 간섭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국경의 벽을 낮추어 시장이 경제를 지배할 수 있도록 자유의 영역을 최대한 확대하고, 자본과 재화가 자유롭게 유통되도록 하면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는 논리이다.

그러나 1999년 12월 시애틀 WTO각료회의 반대 시위가 보여 준 것 같이 미국식 세계화에 대한 우려 또한 깊은 것이 사실이다. 동 시위는 NGO와 일반인들이 WTO를 신자유주의 및 세계화의 대행기관으로 인식하고 이를 저지하려 시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이들 NGO들은 WTO를 단순히 통상문제만을 다루는데 그치지 않고, 사회·문화 등 생활환경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WTO가 각국의 국회에서 통과한 국내법까지도 무효화시킬 수 있다는 것, 특히 선진국이나 다국적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그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사실에 인식의 기초를 두고 있으며, 세계화 진전에 따라 빈곤의 세계화가 오히려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III. 세계화의 문제점에 따른 해결방안의 하나로 경쟁정책의 국제규범화: 무역과 경쟁정책의 상호보완

그렇다면 경쟁정책의 국제규범화는 위에서 보인 세계화에 따라 제기되는 제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긴다. WTO 설립 이후 새로운 통상의제로 무역과 환경, 무역과 노동 등이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으나 이러한 의제들은 그 배후에 선진국이 세계경제에서의 기득권을 계속 유지시키기 위해 성립된 의제임을 간과

세계경제환경의 변화와 경쟁정책

할 수 없다.

이에 반해 무역과 경쟁정책 의제는 국경에서의 무역장벽을 넘어서 각국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적 무역장벽으로 인한 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어 무역원활화에 도움을 주어 결국 무역으로부터 얻는 이득을 크게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도상국들의 경우 경쟁정책보다는 산업정책 및 보호무역정책에 익숙해져 경쟁법 도입을 여러 이유를 들어 늦추고 있는 실정이다.

1. 경쟁정책과 무역정책의 상호작용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무역과 경쟁정책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데, 민간기업의 반경쟁행위가 무역과 투자자의 흐름을 왜곡할 수 있으며, 정부규제가 경쟁을 왜곡하고 시장접근을 방해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WTO 출범 이후 각국의 명시적 무역장벽이 많이 낮아짐에 따라, 무역절차의 불투명성 및 국가간 부조화, 국내시장 진입 후 국내외 경쟁업체간 차별대우 등 실질적 시장접근의 보장이 주요 이슈로 대두되기 시작하였는데, 경쟁법·정책 분야는 최근까지 국내경제상황을 반영하여 각국별로 상이한 형태로 발전되어 왔으며, WTO의 규율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초국경적인 기업활동의 증가추세에 따라, 다국적기업의 경쟁제한행위, 국제카르텔 및 국제합병, 기타 초국경적 경쟁제한행위 등이 무역을 원활케 하는 소위 '무역원활화'를 저해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어 이러한 국제적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국제적 경쟁법 집행'을 위해 경쟁정책 분야의 국제협력의 필요성이 대두되게 되었다.

특히, '98. 4월 OECD '경성카르텔(hard-core

cartel) 금지에 관한 권고' 채택 이후, 국제카르텔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국제적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각국의 집행노력에 대한 상호압력이 증대되고 있음도 주지의 사실이다.

경쟁법·정책의 국제적 차원의 문제들에 대처하기 위하여 경쟁법·정책의 국제규범화 내지 국제적 수렴·조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들이 제기되어 왔으며, OECD, WTO, UNCTAD 등의 국제기구들을 통하여 국제경쟁규범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어 왔다.

무역관련 경쟁이슈로는 국제적 기업결합, 국제카르텔, 수출카르텔, 반덤핑조치 및 시장접근 문제로서 수직적 거래제한이 있는데, 이들 이슈 중에서 국제카르텔 문제와 경쟁법의 다자규범화 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반덤핑조치만을 살펴보기로 하자.

국제카르텔 문제는 세계시장의 통합의 진전에 따라 소수의 기업이 전세계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품목에 있어서는 국제카르텔을 통해 관련품목의 가격을 상승시키고 부당이득을 취할 유인이 증가하게 되었는데 미국은 1977년 '국제사업활동에 관한 반독점지침(Antitrust Enforcement Guidelines for International Operations)'을 법무부가 제정하여 미국 독금법의 역외적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쓰고 있으며, 1988년 개정을 거쳐 1995년 연방거래위원회와 법무부에 의해 개정·보완하여 미 법무부(DOJ)가 '99. 9월까지 부과한 벌금총액 11억 불 중 90% 이상이 국제카르텔 관련기업에 부과된 벌금임을 볼 때 국제카르텔 이슈는 무역관련 경쟁이슈 중 가장 중요한 관심사라고 볼 수 있다.

반덤핑조치(Anti-dumping Measures)에 관해 우리나라, 일본, 홍콩, 아시아 국가 등은 현재와 같은 형태의 반덤핑정책의 운용이 경쟁제한적

효과가 크므로, 경쟁정책적 차원에서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는데 반해 미국은 반덤핑조치는 경쟁정책과는 다른 고유의 정책적 목표가 있는 별개의 제도로서, 경쟁정책적 차원에서 논의될 성질의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팽팽히 대립중에 있다.

2. 경쟁법의 국제협력 현황

경쟁법의 국제협력 분야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경쟁법의 일방적 역외적용의 문제인데 특히 미국은 외국에서 발생한 경쟁제한적 행위라 하더라도, 동 행위가 미국시장에 영향을 미친다면 미국의 경쟁법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른바 '영향이론')을 견지하고 있어 각국간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데, 이러한 자국 경쟁법의 일방적 역외적용은 상대국의 대항입법 제정과 같은 강력한 반발을 야기하는 한편, 역외에 존재하는 경쟁법 위반의 증거를 효과적으로 수집하는 데도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어 이를 피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적극적 예양' 개념을 포함한 양자협정을 체결하여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미국을 중심으로 주요 선진국들은 국제적 성격의 경쟁법 위반사안에 대해 경쟁당국간 상호협력을 통한 경쟁법 집행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양자협력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양자협력협정 체결현황을 보면 미국-독일('76), 호주-뉴질랜드('83), 독일-프랑스('84), 미국-EU('91), 미국-캐나다('95), 미국-이스라엘('99), 미국-호주('99), EU-캐나다('99), 미국-일본('99) 등이 있다.

양자협력협정 체결의 방식을 선호하는 미국과 달리, 대부분의 국가는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국제경쟁규범을 제정하기 위한 다자간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양자협력협정의

방식은 경쟁정책집행에 있어 실질적으로 협력이 필요한 소수의 주요 선진국간 효과적인 협력을 추구하고 있는 데 반해, 다자간 협력방안으로서의 국제경쟁규범은 GATT/WTO 무역협정과 같이 구속력과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시킴과 동시에 초국경적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현재의 세계시장에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마련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나 그 현실성에 있어서는 미국의 의지에 달려 있는 문제라 하겠다.

3. 다자간 경쟁규범 제정 협력방향과 전망

개발도상국의 경우 경쟁법 도입에 대한 반대주장도 결코 간과 할 수 없는 수준에 있어 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하겠다. 많은 개도국의 경우 기득권 세력의 존재로 경쟁주창 세력이 상대적으로 미약하여 시장지향적 개혁과 경쟁법의 도입에 어려움이 있어서 경쟁문화의 정착을 위해 국제적 협력과 기술적 원조는 이를 위한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경제발전 초기단계에서는 자원의 직접배분위주의 산업정책의 유용성이 인정되지만 경제개발이 진척되면서 산업구조가 복잡 다기해지고 첨단산업이 성장하게 되면서 한계에 부딪히게 됨에 따라 정부의 산업정책에 의한 인위적 비교우위의 창출은 글로벌 경쟁체제하에서는 더 이상 경쟁력을 지속시킬 수 없음을 인식하고, 정부개입보다는 시장의 가격기구의 힘으로 경제가 운영되어야 할 것인데 여기서 경쟁정책의 중요성이 부각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다자간 경쟁규범협상시 개별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특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이는 각국의 경제 및 사회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초국가적 경쟁법의 제정 혹은 각국간 동일한 내용과 절차규정을 갖는 경쟁법을 보유하도록

세계경제환경의 변화와 경쟁정책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다 시말하면 다자간 무역협정의 경우처럼 다자간 경쟁규범도 WTO 기본원칙에 반하지 않는 한 각 국내법상의 차이를 용인하도록 하여야 하며, 각국의 발전단계에 따라 국제경쟁으로부터 받는 혜택이 다르므로 다자간 규범상의 의무부담수준은 경제개발수준에 따라 융통성있게 정해져야 할 것이다.

이는 WTO 차원에서 다자간 협상이 시작된다면 경쟁정책의 원칙들이 무역과 경쟁의 상호작용에 맞게 수정되어야 할뿐만 아니라 무역원칙 또한 경쟁정책의 특성에 맞게 수정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위와 같은 협력이 이루어질 때 시장의 세계화에 따른 부정적 요소보다는 긍정적 요소들로 인하여 자유무역체제가 지속될 수 있으며 자유무역에 따른 후생증대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비록 경쟁정책이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일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무역과 경쟁정책에 관한 뉴라운드를 시작하고자 1999년 12월초에 있었던 GATT/WTO 주관하에 제9차 다자간 무역협상을 주관하기 위한 제3차 WTO 각료회의가 시작되었으나 뉴라운드는 출범도 못 시킨 채 중단되고 말았다. 중단 배경에는 함께 참여한 NGO(비정부기구)의 목소리내기에 영향을 받은 바가 크다.

우리 나라와 EU, 일본, 스위스, 뉴질랜드, 체코 등 동구권, 칠레 등 일부 중남미 국가들은 국

제무역과 투자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 증대를 위하여 국제경쟁규범 제정에 관한 다자간 협상 개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미국과 아울러 인도, 파키스탄, 이집트 등의 일부 개도국과 아시아, 홍콩 등은 시기상조라고 강력 반대하였다.

경쟁정책 분야에서 국제회의 등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미국이 다자간 경쟁규범 제정에 관한 협상을 앞장서 반대하며 표면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이유는 경쟁법 자체가 없는 나라도 많고 또 경쟁법이 있는 경우에도 그 실제적 내용들이 너무 달라 통일된 규범을 만들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경쟁법 집행에 있어서 국가간 협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나라별로 양자협정을 체결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곁에 내세우는 이유 뒤에 미국이 다자간 경쟁규범 제정에 관한 협상을 반대하는 진정한 이유는 크게 몇 가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첫째, 다자간 경쟁규범이 제정될 경우 반덤핑제도의 폐지는 어렵더라도 경쟁정책적 관점을 받아들여야 함을 의미하여 반덤핑제도의 존립 자체가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며¹⁾, 둘째, 미국 입장에서는 다자간 경쟁규범의 제정시 예상되는 기대이익이 경쟁법 운용에 관한 양자협정 체결시보다 오히려 작을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국제무역과 관련되는 경쟁법 문제에 있어서 미국의 주요 관심사항의 하나는 시장붕쇄 효과를 가지는 기업의 반경쟁행위를 다스리는 일인데 다자간 규범으로 이를 규율하기가 여의치 않다

1) 경제학적으로 반덤핑판세의 부과는 경제적 후생의 감소를 가져온다고 보아 이론적 타당성이 매우 희박하며 독점이익을 창출하는 전략적 덤핑이나 약탈가격 덤핑만 규제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의 견해이다. 이에 관해서는 이미 1995년 OECD/경쟁법정책위원회 회의에서 경제학자 윌리그(R. Willig)와 미국 당국자간에 논쟁이 이루어졌는데 미국의 반대로 OECD 공식보고서로 채택되지는 못했다.

는 점이다.²⁾ 그러나 다자간 경쟁규범이 없다면 국제적인 규범을 따라야 할 필요가 없게 되어 미국과 같이 경제력을 통상협상에 임하고 있는 나라는 오히려 양자협정 체결 등으로 또는 자국법의 일방적인 역외적용에 의하여 목적하는 바를 쉽게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미국의 주장은 오히려 경쟁법의 다자간 규범이 제정되어야 함을 역설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데, 현재와 같은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의 기업간 공정한 경쟁의 장이 만들어지면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국제경쟁규범에 입각한 교역으로 거래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이 확보되어 거래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양자협정의 확산이 다자간 경쟁규범 제정을 대신하기에는 각국 정부의 행정집행비용 및 글로벌 기업들의 규범준수비용이 막대해질 것을 예상해 볼 수 있다.

미국측에서 우려하고 있는 반덤핑문제도 미국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반덤핑제도를 민간의 반경쟁적 관행에 대한 구제수단으로 고안된 것이 아니라 시장을 왜곡하는 정부의 산업정책에서 비롯된 인위적 우위와 국가간 경제적 제도의 차이에서 비롯된 불공평을 치유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정의할 경우 앞에서 정의된 상황에서 야기된 덤핑에 대해서만 반덤핑조치가 가능하도록 제도가 설계되고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즉, 장기

적으로 반덤핑제도는 정부의 산업정책적 의도에 의하여 조성된 인위적 비교우위에 대한 구제와 아울러 경쟁법상의 약탈적 가격설정행위로 이루어지는 덤핑만 구제되도록 제도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³⁾

IV. 결론

경제의 세계화는 한 나라의 경제정책이나 한 기업의 경영의사결정이 더 이상 국경 내에서만 머무를 수 없다는 인식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지구촌이 하나의 시장으로 이루어진 현재의 상황에서는 국가간 협력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하겠다.

앞에서 우리는 세계경제의 변화양상과 그 변화요인 중의 하나로서 디지털 경제의 급속한 확산이 세계화를 더욱 가속화하고 있음과 그에 따른 문제점을 보았다. 그 결과 경쟁정책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경쟁법·정책의 다자간 규범 노력을 펴 나갈 때 현재 나타나고 있는 세계화에 따른 문제점을 일부분이라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되었다.

여기서 경쟁법·정책의 다자규범화에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반덤핑의 경쟁정책적 해석 문제이다. 미국, EU 등 선진국에서 주로 실시해온 반덤핑조치는 무역거래의 연속성

2) 즉, 어떤 나라의 기업들간 수직적 제한에 의하여 외국 상품이나 서비스의 시장진입이 저지될 경우에도 이러한 수직적 제한의 효율성 증진 효과가 경쟁제한 효과보다 큰 것으로 판단된다면 합리원칙상 이를 위법행위라고 할 수 없을 것이고 그러한 제한에 의하여 불이익을 받은 집단이 우연히 국내 사업자가 아니라 외국 상품이나 서비스라고 하여 국제협정 위반이라고 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이는 후지-코다 필름 분쟁사건에서 여실히 드러난 바와 하겠다.

3) 반덤핑제도는 또한 무역자유화에 따른 조정비용을 감소시킴으로써 정치적인 차원에서 각국이 자유무역질서를 보다 용이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순기능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무역자유화가 이루어지면 과거 해외경쟁으로부터 보호받던 산업분야의 기업도산이나 실업자 수가 늘어나고 이들을 새로운 산업분야에 흡수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조정비용이 소요되는데 반덤핑조치가 이를 완화하는 수단으로 쓰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글로벌 시장의 성립은 이제 국내시장과 국외시장을 구분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는 현실이다.

세계경제환경의 변화와 경쟁정책

에 심대한 영향을 미쳐온 것이 사실인데 이미 서비스산업으로 산업의 중심축이 옮겨진 상태에서 국내에 남아있는 사양산업의 유지 및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정치적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한 보호무역적인 반덤핑조치의 남발은 이제 그 종언을 고할 때다.

그렇지 않아도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세계화로 미쳐 준비되지 못한 개도국의 경우 빈익빈의 현상이 더욱 나타날 수 있는 바 이들 국가에게 남아 있는 것은 오직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노동력 뿐으로 이러한 저임금으로 생산된 제품에 다시 반덤핑관세를 부과하여 국제무역의 원활한 흐름과 국가간 상생의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무역정책들은 선진국들이 주장하는 공정한 무역을 위해서도 지양되어야 할 일이다.

선진국의 경우 세계무역, 금융기구 등을 통한 지적재산권 확보와 금융자본력의 확산으로 인한 세계경제의 통치력은 개도국에게도 나름대로 생존의 장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노동 및 환경상황을 무역에 연결시켜 개도국의 비교우위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노력은 그 어떠한 미사여구로 감추려 해도 그 진의를 의심하게끔 만든다. 또한 경쟁법·정책의 국제규범화에서 반덤핑문제를 포함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 오히려 다자협상을 피하려는, 특히 미국의 노력은 양자협정 등을 통하여 힘의 논리를 앞세운 경제협상에서의 우위를 잡히려는 노력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개도국들이 경쟁법 도입에 관해 갖는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 무역정책과 경쟁정책의 상호연관성을 충분히 고려한 경쟁법의 국제규범화 노력이 선행될 때 세계화에 따르는 부정적 결과들을 방지할 수 있는 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개발도상국들도 지난 97년 아시아 금융위기에 서 보여준 바와 같이 정부의 산업정책에 의한 인위적 비교우위 창출이 세계화된 시장에서는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음을 인식하고, 경쟁법 도입으로 국내시장구조를 경쟁적으로 만들며 동시에 시장에서 생성된 경쟁력으로 글로벌 경쟁에서 지속적으로 우위를 지켜나갈 수 있음을 배워 나가야 할 것이다. **공정**

■ 참고문헌

- 공정거래위원회 정책국(편), 「경쟁정책과 무역정책의 상호작용」, 국제경쟁정책동향 96-2, 1996.
- 김치걸, “경쟁규범에 관한 국제논의동향” 「통상법률」, 통권제25호, 법무부, 1999
- 남경우, “경쟁法の 국제적 운용을 위한 정책방향”, 「공정경쟁」, 제60호, 공정거래협회, 2000. 8.
- 심영섭, 고준성, 「무역정책과 경쟁정책의 조화 - 경쟁정책의 통상이슈화와 우리의 대내외 대응」, 산업연구원, 1997.
- 장승화, “공정과 경쟁의 만남 - 반덤핑제도과 경쟁법/정책의 조화 -”, 「통상법률」, 통권 제28호, 법무부, 1999
- 장승화, “무역과 경쟁법·정책의 만남”, 「통상법률」, 통권 제25호, 법무부, 1999
- 한철수, “21세기 국제경쟁규범의 발전전망”, 「통상법률」, 통권 제31호, 법무부, 2000
- Jenny, F., “Globalization, Competition and Trade Policy : Issues and Challenges”, International Workshop on Competition Policy, KFTC/OECD, 1999.
- OECD, “Conference on Trade and Competition Policies: Exploring the Ways Forward”, OECD Journal of Competition Law and Policy, Vol. 1, No. 4, 1999.